

직제규정

제정 2009. 5. 29. 규정 제 6호
 개정 2010. 1. 19. 규정 제 39호
 개정 2010. 11. 8. 규정 제 66호
 개정 2011. 1. 1. 규정 제 74호
 개정 2011. 5. 11. 규정 제 87호
 개정 2011. 7. 25. 규정 제100호
 개정 2012. 1. 6. 규정 제117호
 타내규개정 2012. 5. 8. 규정 제128호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12.8.31.] [규정 제137호, 2012.8.31., 전부개정]
 [시행 2012.11.28.] [규정 제146호, 2012.11.28., 일부개정]
 [시행 2013.6.27.] [규정 제159호, 2013.6.27., 일부개정]
 [시행 2013.12.9.] [규정 제169호, 2013.12.9., 전부개정]
 [시행 2015.1.1.] [규정 제202호, 2014.12.22., 전부개정]
 [시행 2016.1.1.] [규정 제240호, 2015.12.30., 전부개정]
 [시행 2016.00.00.] [규정 제258호, 2016.11.8.,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의 조직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원 및 본부장 하부에 두는 단위 조직으로서 부, 실, 소를 말한다.
2. “팀”이란 부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 하부에 두는 사업별 또는 기능별 단위 조직을 말한다.
3. “직급”이란 근무경력과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분류한 직원의 직무상 등급을 말한다.
4. “직위”란 직무에 따라 구분되는 임직원의 조직상 위계를 말한다.
5. “직원”이란 재단의 임원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직원을 말한다.
 - 가. 융합직원
 - 나. 무기계약직원
 - 다. 기간제 근로직원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재단의 조직 및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조직

- 제4조(상임임원)** ① 재단에 상임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감사 1명, 상임이사 2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상임감사는 재단의 회계, 업무집행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소관 부서의 분장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선임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상임이사 중에서 정한다.
- ⑥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이사, 상임이사, 총괄본부장, 제5조제1항의 순서에 따른 본부장, 본부장을 겸임하지 않는 부서장 중 제13조부터 제28조까지의 순서에 따른 부서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이사장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위임전결규정」으로 정한다.

- 제5조(본부 및 부서)** ① 재단에 국가장학금본부, 국가학자금본부, 학생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를 두며 각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국가장학금본부: 국가장학부, 우수장학부
2. 국가학자금본부: 대출지원부, 상환관리부, 상환지원부
3. 학생지원본부: 교육기부부, 학생민원부
4. 경영지원본부: 학자금운영부, IT전략부, 총무부

- ② 기획조정실, 인사실, 홍보실, 대외협력실, 장학정책연구소는 이사장 직속으로 한다.
- ③ 감사실은 감사 직속으로 하여 감사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도록 한다.
- ④ 대학현장지원부 및 지역별 현장지원센터는 총괄본부장 직속으로 한다.
- ⑤ 총괄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소관 부서 및 지역별 현장지원센터의 분장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이사장의 명을 받아 각 본부의 주요사항에 대해 업무 협조 및 조정을 담당한다.
- ⑥ 각 본부의 본부장은 제1항 각 호의 본부별 부서 순서에 따른 선 순위 부서의 장이 이를 겸임한다. 본부장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보좌하며 소속 본부 각 부서의 주요 사항에 대해 업무 협조 및 조정을 담당한다.
- ⑦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소관 본부의 본부장 및 부서장 중 제5조제1항 순서에 따른 본부장, 본부장을 겸임하지 않는 부서장 중 제13조부터 제28조까지의 순서에 따른 부서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총괄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명령이 있기 전까

지는 대학현장지원부장, 제5조제1항 순서에 따른 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본부별 부서 순서에 따른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부서에는 부서장을 두며, 부서장은 소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⑪ 부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당해 부서의 팀장 중 부서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팀) ① 부서에는 팀을 두고, 팀에는 팀장을 둔다.

② 팀장은 부서장의 명을 받아 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팀의 구성·운영, 팀별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직제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직) ① 상임이사, 총괄본부장, 본부장, 부서장 및 팀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총괄본부장 및 본부장은 2급 이상의 융합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서장은 3급 이상의 융합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의 능력, 직급 규모, 정원 등을 감안하여 예외로 운용할 수 있다.

④ 팀장은 4급 이상의 융합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의 능력, 직급 규모, 정원 등을 감안하여 예외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역 및 임시조직 등) ① 이사장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 또는 팀에 검사역, 조사역, 자문역 등 특정한 역할을 하는 역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신규 사업이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하위조직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하위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사무소) 이사장은 사업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국외에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사무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① 이사장은 특정업무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자문, 다른 기관 또는 재단 내 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고문) 이사장은 법률, 회계, 기술 등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비상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2조(조직도) 재단의 조직도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 분장 업무

제13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경영계획 수립, 경영목표·전략 및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직무혁신, 조직관리 및 직무분장, 정원관리,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 대내외 평가, 정부 3.0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성과관리, 예산 업무, 교육부·기획재정부와 관련한 업무협력, 리스크관리, 계약 업무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4조(인사실) 인사실장은 인사, 복무관리, 노사업무, 보수, 임직원 복지, 반부패 청렴, 청탁 방지, 교육연수 기획 및 실행, 경력개발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학습조직 및 워크숍 지원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5조(국가장학부) 국가장학부장은 국가장학금 I·II 유형과 관련된 장학금 사업 기획 및 운영, 대학별 재정배분 및 관리, 소득분위·가족정보·원장관리 기획 및 관리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하며 국가장학금본부장을 겸한다.

제16조(대출지원부) 대출지원부장은 학자금대출사업 제도설계 등 기획, 학자금대출사업 실행, 이자지원, 전국은행연합회 대출정보 등록 및 확인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하며, 국가학자금본부장을 겸한다.

제17조(교육기부부) 교육기부부장은 국가 및 민간 기부 장학사업 기획·운영 및 관리, 기부금(삼성장학기부금을 포함한다) 관련 업무, 재능기부 지원사업, 지식봉사 사업 등 인재육성 지원사업, 취업추천제, 기숙사 등 학생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개발 및 운영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하며 학생지원본부장을 겸한다.

제18조(학자금운영부) 학자금운영부장은 국가장학사업통합업무 기획 및 관리, 학생지원정보 시스템, 학자금중복지원 방지 기획 및 관리, 자금계획 수립 및 운용, 재단체 발행 및 운용, 자금조달, 재단 신용등급 취득 및 관리,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 및 보고, 여유자금 운용업무, 현금의 보관 및 출납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하며, 경영지원본부장을 겸한다.

제19조(대학현장지원부) 대학현장지원부장은 현장상담 및 현장홍보 등 맞춤형 카운슬링사업, 국가장학금과 취업연계장학사업의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업무를 포함한 대학별 현장점검, 지역별 현장지원센터 관련 업무, 소득분위 이의신청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20조(우수장학부) 우수장학부장은 국가장학금 I·II 유형과 관련된 장학금 이외의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포함한다) 사업,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멘토링사업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21조(상환관리부) 상환관리부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기획 및 운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연체관리 등에 대한 기획 및 운영 업무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22조(상환지원부) 상환지원부장은 학자금대출 부실채권 관리 제도 기획 및 관리·회수, 신용유의자 사후관리, 보증채무 이행, 구상채권 관리 및 회수, 채권 관련 소송 및 경매업무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23조(학생민원부) 학생민원부장은 대고객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고객만족, 민원 처리, 정보공개(정보공개 청구의 접수·이송을 포함한다) 총괄, 상담센터 운영 및 고객상담,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관리 및 상담문의 관련 업무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24조(IT전략부) IT전략부장은 정보화 기획 및 개발, 정보시스템 관리, 전산운영 및 유지보수, 전산 통계자료의 관리, 사내 포털시스템 관리 및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영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25조(총무부) 총무부장은 총무, 청사관리, 재단 문서관리, 자산의 취득·임대차관리 및 처분 업무, 물품구매, 사회공헌활동, 정보보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제출, 계리총괄·결산 업무, 예산 집행 실적 통보, 법령·내규 관리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26조(홍보실) 홍보실장은 국내외 홍보, 미디어 관리, 출입기자 지원, 사보발간, 광고, 재단 홈페이지 기획 및 관리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27조(대외협력실) 대외협력실장은 대외협력 업무, 대국회 업무, 국정감사 총괄, 정부부처 업무협력(교육부·기획재정부 제외), 장학재단협의회, 임원 비서 업무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28조(장학정책연구소) 장학정책연구소장은 학자금지원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정기간행물 발간, 각 부서의 해외 관련 업무 지원, 국제행사 주관업무, 국제연구 및 협력 업무, 도서실 운영,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작성 및 분석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29조(감사실) 감사실장은 일상감사, 회계감사, 업무감사 및 감찰, 외부감사 수감 총괄, 준법감시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30조(업무 조정 및 변경) 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조직 내 부서의 분장 업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해당 내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직원 및 정원

- 제31조(직원 및 정원)** ① 재단에는 융합직원 및 무기계약직을 두고, 융합직원의 직급은 1급부터 6급까지로 한다.
- ② 재단 임직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③ 부서별 정원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직원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 제32조(세부사항)** 그 밖에 재단 조직 및 업무 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1. 8. 개정된 본 규정의 직제에 따라 시행한 첫 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직제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경영고문제도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② 내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담당 본부장”을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 ③ 리스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중 “학자금금융연구소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2항 중 “학자금금융연구소”를 “기획조정실”로 한다.

- ④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학자금금융연구소(금융리스크팀)”를 “기획조정실”로 하고, “일반학자금대출부”를 “대출지원부”로 하고, “일반학자금대출부 및 든든학자금대출부”를 “상환관리부”로 하고, “학자금지원부”를

“학자금운영부”로 하고, “신용지원부”를 “상환지원부”로 한다. 제31조 중 “학자금지원부”를 “학자금운영부”로 한다.

⑤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경영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고객지원부”를 “학생민원부”로 한다.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별지서식 8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계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3항 중 “업무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도서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직제규정」 제20조에 따라 학자금금융연구소장이 되고”를 “「직제규정」에 따라 장학정책연구소장이 되고”로 한다.

⑧ 문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IT전략실”을 “IT전략부”로 한다. 제24조 중 “업무지원실장”을 “총무부장”으로 한다.

⑨ 사무인수인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사부장”을 “인사실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1번·2번·6번의 “경영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3번 “인사부”를 “인사실”로 하고, 4번·5번·8번의 “업무지원실”을 “총무부”로 하고, 7번의 “학자금지원부”를 “학자금운영부”로 한다.

⑩ 정보공개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인사부장”을 “인사실장”으로 한다.

⑪ 경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8조, 제24조 중 “업무지원실장”을 “총무부장”으로 한다.

⑫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학자금지원부”를 “학자금운영부”로 하고, “학자금지원부장”을 “학자금운영부장”으로 한다. 제3조 중 “학자금지원부”를 “학자금운영부”로 한다.

⑬ 자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39조 중 “학자금지원부”를 “학자금운영부”로 한다. 제35조 중 “학자금금융연구소”를 “기획조정실”로 한다.

⑭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중 “학자금지원부장”을 “학자금운영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중 “학자금금융연구소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학자금금융연구소”를 “기획조정실”로 한다.

⑮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6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중 “업무지원실장”을 “총무부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업무지원실”을 “총무부”로 한

다.

①⑥ 회계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1조, 제34조제1항제4호, 제52조제4항, 제56조, 제57조, 제58조제4항 중 “업무지원실장”을 “총무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 제5조, 제7조제2항, 제28조제2항·제4항, 제30조,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 제63조 중 “학자금지원부장”을 “학자금운영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4항, 제35조제1항 중 “학자금지원부”를 “학자금운영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업무지원실”을 “총무부”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학자금금융연구소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종합직원”을 “융합직원”으로 한다.

①⑦ 연체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일반학자금대출부”를 “상환관리부”로 한다.

①⑧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튼튼학자금대출부”를 “상환관리부”로 한다.

①⑨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별지서식 3 중 “교육기부사업부”를 “교육기부부”로 한다.

②⑩ 개인성과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 중 “종합직원”을 “융합직원”으로 한다.

②⑪ 구상채권행사 유예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중 “신용지원부장”을 “상환지원부장”으로 한다.

②⑫ 법무사 활용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3항, 제6조 중 “신용지원부장”을 “상환지원부장”으로 한다.

②⑬ 사고보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인사부”를 “인사실”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인사부장”은 “인사실장”으로 한다.

②⑭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1 중 “신용지원부장”을 “상환지원부장”으로 한다.

②⑮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중 “신용지원부”를 “상환지원부”로 한다.

②⑯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8조, 별표 1 중 “종합직원”을 “융합직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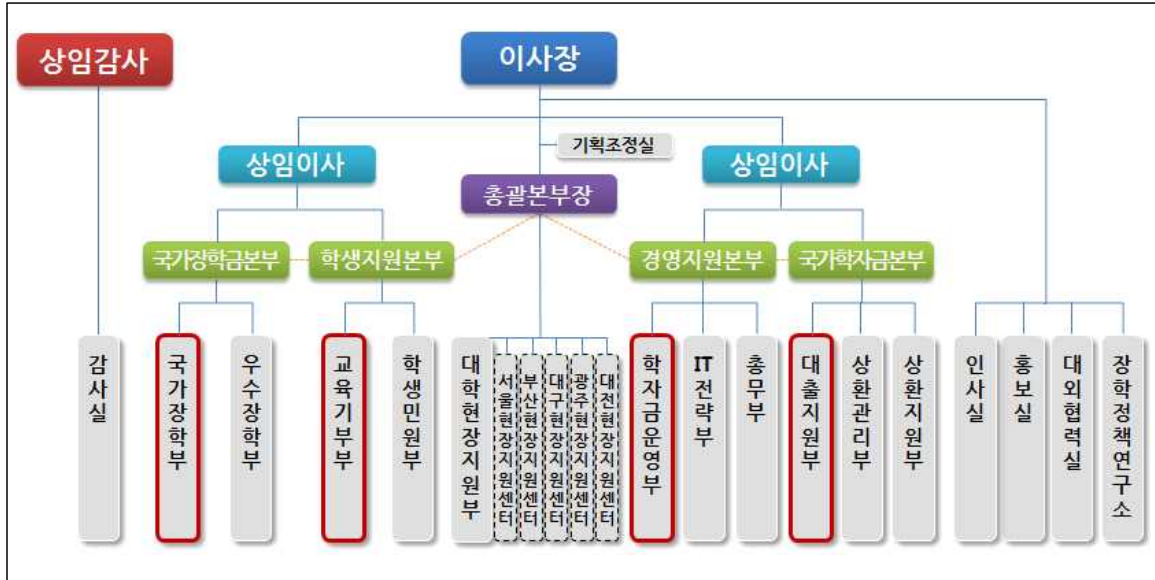
②⑰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6조 중 “종합직원”을 “융합직원”으로 한다.

- 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종합직원”을 “융합직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업무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㉙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단 종합직원”을 “재단 융합직원”으로 한다.
- ㉚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조 중 “종합직원”을 “융합직원”으로 한다.
- ㉛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종합직”을 “융합직”으로 한다.
- 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27조, 제32조 중 “종합직원”을 “융합직원”으로 한다.
- ㉝ 연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6조 중 “종합직원”을 “융합직원”으로 한다.

[별표 1]

재단 조직도(제12조 관련)

□ 4본부 4실 11부 1소 (감사실 별도)



* 붉은색 테두리로 표시된 부서의 부서장은 소속 본부의 본부장을 겸함

[별표 2]

정원표(제31조제2항 관련)

구 분		인원(명) (2016.12.31.이전)	인원(명) (2017.1.1.이후)
임 원	이사장	1	1
	상임감사	1	1
	상임이사	2	2
	소계	4	4
융 합 직 원	1급	6	6
	2급	12	12
	3급	38	38
	4급	83	88
	5급	110	115
	6급	8	8
	소계	257	267
임원 및 융합직원		261	271
무기계약직		100	100
계		361	371